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25. 10.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3.

도시환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임미연 의원 등 6명(최홍린, 이영빈, 서보영, 김장관, 도하석)
- 발의일자: 2025. 10. 2.
- 회부일자: 2025. 10. 10.
- 검토기간: 2025. 10. 10. ~ 10. 16.

### 2.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포상(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29조, 제33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0. 10. ~ 10. 21.):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실태조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29조 및 제3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과 산불 방지 및 예방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산림자원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계 법령 】

###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